

메타윤리학에서 비자연주의의 동기, 특징, 과제에 대한 검토: 파핏의 마지막 입장을 중심으로*†

주 동 료

파핏은 규범을 비자연적이면서도 비형이상학적 속성으로 간주한다. 논문은 그의 비자연주의를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첫째로, 그가 마지막 저작에서 주장한 레일턴의 자연주의와의 수렴 가능성의 근거와 그 주장의 문제를 제시하고, 둘째로 비형이상학적 의미에서라도 규범이 단지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성으로 있다고 보아야 할 이유에 대해 파핏의 저작에서 암시된 바를 논의한다. 파핏에 의하면 규범판단의 참이 규범적 사고에 필요한데, 규범판단을 참으로 만드는, 규범과 그것의 근거인 자연적 속성의 관계 자체가 형이상학적 관계가 아니라서 규범이 자연적 영역에 편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 독특한 관계가 최근 형이상학적 근거나 필연성과 다른 규범적 근거와 필연성의 개념 하에 논의되기에 본문의 셋째 단계에서 이 개념의 내용과 문제점을 논의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규범에 대한 비환원적 비자연주의를 위해 파핏이 제시하는 다른 동기들을 검토한다.

주 제 메타윤리학, 형이상학

주요어 규범, 비자연주의, 파핏, 근거

* 투고일: 2020. 07. 02, 심사 및 수정 완료일: 2020. 09. 29, 게재 확정일: 2020. 09. 30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1912-001)의 지원을 받았음.

1. 머리말

2011년에 두 권으로 출간된 파핏의 *On What Matters*는 규범윤리학과 메타윤리학에서 논쟁적인 주장들을 담고 있다. 규칙공리주의, 칸트 윤리학, 스캔런의 계약론의 옳음의 기준이 수렴할 것이라는 주장, 그리고 비자연주의 이면서도 형이상학적 함축이 없는 인지주의에 대한 옹호가 그 저작의 축이다. 파핏은 2017년 1월 1일 사망했지만, 생애 말미에 그와 대립된 입장에 섰던 철학자들의 논평이 실린 논문집과 파핏의 대응이 편집되기 시작했고, 사후에 각 각 출판되었다. 파핏은 이 논평을 검토한 후에 이제 메타윤리학에서도 자신이 강하게 비판했던 입장들, 즉 자연주의적 실재론과 비인지주의적 표현론의 대표 주자들이 결국 자신과 유사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 결과를 “극도로 고무적(immensely heartening)”이라고 말한다.¹⁾ 필자는 파핏의 메타윤리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바 있는데²⁾ 그의 최종적 입장이 나온 상황에서 필자는 그의 핵심적 주장을 다른 각도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나의 논의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로 파핏의 메타윤리학에서의 수렴 주장을 검토한다. 파핏의 메타윤리학의 기초와 레일턴이 대표하는 자연주의 실재론을 대조시킨 후에, 파핏이 이 둘 사이의 수렴을 주장하는 이유와 그 주장에 대한 의심 근거를 제시한다. 두 입장 사이에 남아 있는 중요한 차이점을 지적할 터인데 이 차이점은 비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라도, 즉 존재론적 함축이 자연적 속성의 그것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규범이 단지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데 대한 파핏의 이유로 이어진다. 그 이유는 그의 긴 저작에서 좀처럼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보기에 그의 메타윤리학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논문의 둘째 단계 목표이다.

1) Parfit (2017), xiii. 향후 *On What Matters*의 참조는 Parfit I, II, III으로 표시함. 파핏의 수렴 주장은 자연주의자 레일턴, 비인지주의 표현주의자 기바드(Gibbard)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논문은 전자와의 수렴 주장만을 논의한다.

2) 주동료 (2015).

파팿에 의하면 규범적 속성이 어떤 중요한 차원에서 필요하고 중요하기에 우리는 그것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행위가 어떤 자연적 속성 때문에 옳다는 판단을 참으로 만드는 데—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판단 없이 규범적 사고를 할 수 없다—규범적 속성이 필요하다는 중요성이다. 그런데 여기서 대상의 자연적 속성과 옳음 사이의 관계 자체가 “비환원적으로 규범적”이다. (III, 443) 즉 규범적 판단 대상의 자연적 속성과 규범성의 관계는 아주 독특한데 우리에게 친숙한 자연적 혹은 형이상학적 관계와 전혀 다른 관계이다. (그래야 “대상의 X가 대상을 옳게 만든다”에서 X와 옳음이 동일 시되지 않는다.)

파팿이 암시하는 자연적 속성과 규범의 이 독특한 관계는 최근 자연적 혹은 형이상학적 근거(ground)나 필연성과 상이한 **규범적** 근거 혹은 **규범적** 필연성의 이름하에 많이 논의되는 개념에 해당하기에, 본문의 셋째 단계는 규범적 근거와 필연성에 제기되는 몇 가지 비판을 소개하고 나의 의견을 덧붙인다. 여기서 나의 논의의 주요 목표는 규범적 근거와 필연성의 존재나 고유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자연주의 옹호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있다. 마지막 절에서는 자연적 속성과 규범이 마치 강(river)과 소네트(sonnet)처럼 “너무도 다른” 범주에 속하기에 동일 시될 수 없다는 주장(II, 324)과, 이와 관련하여 비자연주의로 이끈다고 주장되는 이유 몇 가지를 간단히 제시하고 논의한다.

나는 파팿의 기여들 중 하나가 메타윤리학에서 비자연주의로 가는 주요 이유와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를 거의 남김없이 제시하고 그것을 최선의 형태로 옹호했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주의 실재론으로서 그 이유와 전제의 불충분함을 보이는 반면, 파팿이 강조하는 규범성의 독특한 측면을 자연주의적으로 해명하고 그 해명이 규범에 관한 직관들과 부합하는지를 보여야 할 숙제를 안게 된다. 파팿을 비판하면서 이 논문이 간접적으로 자연주의 편에 선 것이 사실이지만, 파팿의 마지막 입장 정리가 드러내는 메타윤리학에서의 전선의 형태를 선명하게 부각하는 것이 논문의 가장 커다란 목적이다.

2. 파핏의 비자연주의와 레일턴의 자연주의 메타윤리학의 기초

파핏의 입장의 핵심은 세 단계의 주장으로 구성된다.³⁾ 첫째는 규범판단에 대한 비인지주의와 대부분의 반실재론적 관점, 그리고 규범의 내용에 대한 이해에서 주관주의를 논박하는 부분이다. 그에 의하면 규범판단은 판단자의 태도를 표명한 것이 아니고 진리치를 가지는 명제일 뿐 아니라 그 판단을 참으로 만드는 것은 대상 행위에 내재한 객관적 가치이지 행위가 어떤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킨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참인 규범 판단들이 존재한다. 이는 전형적인 실재론의 외형을 가진 주장들이다. 둘째로, 규범은 그 어떤 자연적 속성으로 환원(속성-동일)될 수 없는 그 자체 고유한(*sui generis*) 부류의 속성이다. 이 비자연주의의 옹호에는, 우선 규범(예를 들어 옳음)과 특정 자연적 속성(Na)이 동일하다면 Na를 가진 행위가 옳다는 판단은 Na를 가진 행위가 Na를 가진다는 사소하게 참인 주장이 되어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판단일 수 없다는 논증(Triviality Argument), 그리고 규범은 다른 식으로 표현될 수 없는 단적인 측면 – “행해져야 함”의 차원 – 을 가지는데 그 어떤 자연적 속성도 이러한 함의를 가지지 않는다는 논증(Normativity Argument)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비자연적 속성에 대해 인식론적, 형이상학적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기에 파핏의 비자연주의의 마지막 단계는 존재론적으로 두터운 함축을 갖지 않는 의미에서 규범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규범 관련 판단, 숙고, 행위 결정이 가능하려면 그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규범 속성은 경험적, 인과적으로 확인되거나 그것이 있는 시공간을 찾을 필요가 없는 속성으로서, 다른 추상적 대상들(의미, 자연법칙, 철학이론, 논리적, 수학적 진리, 교향곡)과 함께 존재론적 함축이 없는 차원에서 존재한다. (“실재론”이 대체로 존재론적 함축을 가지기에 파핏은 자신의 입장을 처음에는 “비자연주의적 비형이상학적 인지주의”라고 불렀다가 2017년 책에서는 “비실재론적 인지주의(Nonrealist Cognitivism)”라고 부른다. 첫 단계의 실재론적 경향이 유지되지만 존재론

3) 이하의 기술은 Parfit II의 Part 6과 III의 Part 7의 핵심 부분을 요약한 것임.

적 함축을 가진 규범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하에서 이러한 함의를 담은 파핏의 입장을 그냥 비자연주의로 칭함.4)

레이턴의 자연주의적 실재론에 의하면 규범은 특정 고차적 자연적 속성이다.5) 옳음과 같은 규범속성을 일부 자연적 속성과 동일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행위를 인도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등 실천적 속고와 사회적 차원에서 규범이 수행해야 할 복합적 역할(job description)이 있다. 이러한 역할을 만족하는 개별 대상(행위, 제도)들의 물리적 속성은 무한히 다양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검색한 결과 의미 있는 “고차적 차원의 유사성”(2018, 51)이 있다고 해보자. 이 자연적이면서 고차적인 속성이 왜 광범위한 대상들에 규범이 귀속되는지를 해명해 줄 만큼 설명력이 있고 미래 판단들에도 투사될 만하다면 우리는 그 고차 속성이 바로 규범에 해당한다는 강한 증거를 갖는다. 레이턴은 이러한 탐구의 결과 광의의 결과주의적 규범 이론에 도달한다. 즉 전통적 공리주의를 넘어서서 (인간관계, 지식, 미적 활동 등을 포함한) 다수 객관적 요소들로 구성된 가치와 그 분배 상태로 규범을 이해한다. 이 고차적 속성을 통해 왜 개별 경우에 한 대상의 옳음이 그 대상의 구체적 물리적 속성에 수반하고 비대칭적으로 의존하는지를 해명할 수 있다. (그 대상과 물리적으로 동일한 것은 규범에서도 동일하고, 다른 물리적 대상도 고차적 유사성을 가지면 동일 규범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왜 특정 물리적 대상의 집합이 규범을 구현하는지도 이 고차속성에 의해 설명한다.) 레이턴의 자연주의의 마지막 요소는, 규범적 개념과 자연적 개념의 의미 환원을 거부한다는 점이다. 그에 의하면 옳음의 역할 리스트는 “옳음”의 의미론에 해당하지도 않을뿐더러, 옳음의 역할 리스트와 그 어떤 (물리적 혹은 고차적) 자연적 속성의 역할 리스트 (물리적, 자연적 담론 내에서의 기술)도 동일하지 않기에 각자를 대변하는 개념들 간 의미 환원(분석적 관계)은 거부되어야 한다. 규범 개념과 고차적 자연적 개념은 의미는 다르지

4) 규범은 경험적, 인과적 속성이 아예 아니기에, 초자연적인 형태의 존재론적 함축을 가지고 과학의 인과적 세계 탐구와 충돌하거나 경쟁하지 않는다. (II, 307)

5) 레이턴의 입장은 논문집 (Railton 2003)의 Part I, II의 논문들과 최근의 논문 (2017, 2018) 참조.

만 동일 속성을 지칭하는 두 재현 통로이다. (따라서 레일턴의 입장은 비분석적(의미-비환원주의적), 속성-환원주의적 자연주의 실재론이다. 이하에서 “레일턴의 자연주의”는 이러한 함의를 담은 입장을 지칭한다.)

3. 파핏의 수렴 주장과 남아 있는 차이점

파핏은 어떤 근거에서 자신의 비자연주의와 레일턴의 자연주의가 아직 규범 해명을 달성한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두 입장은 “이미 만났고... 더 이상의 이견이 없다면 [규범 탐구의] 동반행위를 함께 할 수 있다”(Parfit III, 113)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을까? 방금 기술한 레일턴의 규범-고차 자연적 속성의 환원과정은 마치 물(water)과 H_2O 의 동일성, 열(heat)과 분자의 평균 운동에너지의 동일성을 확인하게 된 과정과 유사하다. 즉 물이 가진 현상적, 유기체-관련적 역할 리스트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열의 현상적, 인과적 역할 리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각각 H_2O 와 분자의 평균 운동에너지로 밝혀진 것과 동일한 과정이다. 그런데 파핏은 물과 열이 특정 자연속성과 동일시되는 과정이 옳음의 자연적 환원 가능성과 유비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다. (III, 75이하, 93이하) 물과 열의 개념에는 이미 레일턴이 말하는 역할 리스트 같은 것이 함축되어 있기에 누구라도 그 역할을 수행하는 속성을 찾게 마련이지만, 즉 “물”과 “열”만으로는 그 지시체가 드러나지 않기에 그 내용을 참조하여 간극(gap)을 메워주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옳음의 함의는 “행해져야 함”으로 단적으로 명백하기에 (일부 논자들이 파핏의 입장을 기술하는 용어로는 규범은 “근본적” 혹은 “원초적”(primitive) 속성이기에) 메워져야 할 간극이 없다. 물론 옳은 행위를 옳게 만드는 자연적 속성이 있지만 이 옳게 만드는(right-making) 속성은 옳음 자체가 아니다. 만약 둘이 동일하다면, 즉 여기서 만듦(making)이 형이상학적 구성(constitution)이라면 그 자연적 속성을 가진 행위가 옳다는 표현은 사소하게 되고 자연속성들 간 (동일성) 관계를 기술하는 그 어떤 명제도 규범적 함의를 갖지 않는다.

파핏의 수렴 주장은 다음에 근거한다. 첫째로, 레일턴이 인정한대로 규범 개념과 자연적 개념 간 의미 환원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로, 파핏에 의하면 의미 있는 개념이고 어떤 대상에 그것을 귀속시킨 판단의 내용이 내재적으로 신뢰성을 가진다면 일단 어떤 개념도 “넓은 의미”에서는 존재하는 속성을 지칭한다. (이를 파핏은 “용어-발생적(pleonastic)” 혹은 “기술-부합적(description-fitting)” 속성 관점이라 칭한다; III, 66.) 물론 이 넓은 존재자들 중에서 시공간 내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좁은 의미의 존재를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추상적, 비자연적 존재자가 갈릴 것이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의미-환원되지 않는 개념이면서 규범적 역할을 하는 어떤 것을 표시하는 개념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연적 속성과 더불어) 바로 파핏의 비자연적 영역을 인정한 셈이다. 고유한 규범적 진리, 즉 고유한 의미를 가진 규범 개념들이 포함된 명제의 참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미 파핏이 염두에 둔 비자연적 진리를 인정한 것이고 그 진리는 비자연적인 규범이 있기에 가능하다. 그리고 이 비자연적 영역이 존재론적 함축을 갖지 않기에 레일턴과 같은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도 (의미-환원을 믿지만 않는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

파핏의 수렴 주장에 이어지는 (Parfit III에 수록된) 최종 논평에서 레일턴은 고유한 의미를 가진 개념들이 지칭하는 것을 모두 어떤 속성의 영역으로 구체화(reify)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만약 존재론적 함축이 없는 의미에서 규범의 고유한 영역을 설정한다면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의 규범적 사실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메타윤리학적 입장들의 “표면적 다양성 근거에 있는 통합성을 발견하는 것”은 중요한 성취라고 인정한다. (Parfit III, 118, 123)

파핏의 수렴 주장과 레일턴의 일정 양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의 핵심을 기술하는 각자의 언급에서 나는 진정한 수렴이 성취 되었는지를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레일턴은 파핏의 “넓은 규범적 사실”을 자신이 인정할 수 있지만, 자신이 인정하는 그 고유한 규범의 영역 혹은 “사실”은 단지 규범적 판단이 참임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참으로 만드는 속성은 (고차적) 자연적 속성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고유한 (비자연적인)

규범의 영역은 엄밀하게는 속성이 아니라 **개념**의 차원이다. (III, 121) 레일턴은 실질적 내용을 가진 명제에 포함된 모든 술어가 (나름의) 속성을 지시한다는 파팻의 속성 개념은 기실 언어화된 것 혹은 명목적인 것으로서의 속성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2017, 53) 물론 파팻의 규범은 존재론적 함축이 없는 속성이므로 두 관점의 실제적 차이는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파팻의 규범은 단지 개념으로만 혹은 개념적 영역에서만 “있는” 것일까? 파팻이 이를 긍정한다면 두 입장의 실질적 차이는 사라지지만, 나는 파팻이 규범은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비자연적 규범 개념은 허구적 개념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⁶⁾ “넓은” 의미에서라도 규범이 **속성**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하고 나는 파팻이 이와 관련해 제시한 바를 다음 절에서 논의한다.

둘째로, 레일턴은 첫째 논평에서 자연적 속성과 규범이 마치 강과 소네트처럼 완전히 다른 범주에 있다는 파팻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강과 소네트와 달리 규범은 자연적 속성에 수반하고 비대칭적으로 의존하는 식으로 묶여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수반에 의해 사람들이 (규범이 그것 때문에(in virtue of) 귀속되는) 특정 자연적 속성에 반응하고 주목하면서 도덕적으로 행위를 선택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규범의 행위-인도를 가능케 한다고 본다. 만약 규범 vs. 자연적 속성의 관계가 소네트와 강과 같은 차원의 차이라면, 그것을 전제하는 비자연주의적인 (더구나 존재론적 함축이 없는) 규범이론이 수반 + 비대칭적 의존이라는 규범과 자연적 속성 사이의 “심층적” 연관을 해명할 수 있을까?⁷⁾ (Railton 2017, 55-56)

레일턴의 이 주장에 대해 파팻은 만약 A와 B 사이에 레일턴이 말하는

6) 존재론적 함축을 배제한 파팻의 규범관이 결국 규범 개념은 유지하되 그것의 지시체의 외연을 비워두는 매키(Mackie)의 오류이론과 닮았는 입장이 되리라는 진단은 Olson (2018), 264, Mintz-Woo (2018), 719 참조.

7) 수반 자체는 필연적 공변 관계이기에 대칭도 비대칭도 아니다. 규범이 다수의 구체적 물리적 속성에 수반하고 반대 방향의 수반이 성립하지 않을 때 그 관계는 비대칭적이 된다. 그리고 미시적 물리적 수반 기저 속성들 사이에 규범적 관련성을 가지는 고차 유사성이 발견될 때 이 고차 자연적 속성과 규범을 동일시하는 일반적 (규범)이론을 통해 레일턴의 자연주의는 도덕적 수반을 설명한다.

(사소하게 참이 아닌) “심층적” 관계가 존재하려면, A와 B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상이한 것들이어야 한다고 답한다. (III, 107-8) 자연주의적 속성-동일 하에서 규범은 자연적 속성이므로 둘이 아니라 하나만 있게 되어 그 어떤 (“심층적”) 관계도 맺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언급은 파팿이 레일턴 식의 자연주의를 오해한 데 기인한 듯하다. 레일턴에 의하면 수반과 비대칭 의존 관계는 행위의 **미시적** 물리적 속성과 규범 사이에 존재한다. 그 둘은 물론 다른 속성이기에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지만 수반의 해명에서 이 둘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위의 각주 참조) 미시적으로 다양한 속성 예화들이 만약 유의미한 고차 유사성을 보인다면 바로 후자가 규범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규범적 수반은 미시적 물리 속성과 고차 자연적 속성 사이의 관계이고, 이는 우리에게 친숙한 기능적 속성의 기저 속성에의 수반과 유사하다. 치즈를 둘러싼 대접, 건드리면 작동하는 울가미, 레이저 총으로 된 물리 대상 각각이 미시적 차원에서 완전히 달라도 높은 확률로 근접한 쥐를 잡거나 죽이는 속성을 갖기에 모두 “쥐덫”(mousetrap)이다. (쥐덫임은 각각에 수반함.) 여기서 쥐덫임이라는 속성은 특정 물리적 기저 속성과 동일시되지 않고 “높은 확률로 쥐를 잡는 역량”이라는 고차 자연적 속성, 즉 기능적 속성과 동일시된다. 파팿은 수반 관계와 수반의 해명에 동원되는 세 가지 속성과 두 관계, 즉 규범의 미시적 속성에의 수반과 (그것을 해명하는) 고차 자연적 속성과 규범의 동일시를 간과하고 있다.

물론 파팿은 고차 자연적 속성이 수반의 해명에 필요함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을 규범과 동일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고차 속성과 규범의 동일시를 매개로 규범적 수반과 비대칭 의존을 해명하는 자연주의적 방식에 대해서 파팿이 반대할 것이라는 점이 두 입장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는 또 하나의 차이점이다. 비자연주의는 규범적 관련성을 갖지만 규범과 동일시될 수 없는 자연적 속성 (파팿의 **옳게 만드는 속성**)과 규범의 관계를 해명할 이론적 자원을 갖고 있는가? 나는 5절에서 파팿이 암시하였고 최근 일부 비자연주의자들이 도입한바 자연적 속성과 규범이 맺는 독특하고 고유한 관계로 규범적 근거 혹은 규범적 필연성의 개념을 논의한다.

4. 비자연적 규범이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닌 이유?

술어가 있다고 해서 항상 그것을 만족시키는 대상이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무의미한 단어, 모순을 포함한 술어는 일관된 사고를 구성하는 개념이 될 수도 없기에 지시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 또한 유의미하고 지시체를 가진 다수 개념들을 무작위로 선언적으로 연결한 복합 술어나 (“grue”와 같이) 인위적으로 조합된 개념도 단지 개념으로만 있을 뿐 세계 내에 존재하는 유의미한 유사성 (루이스가 펴뜨린 개념으로 세계의 “결을 자르는 (joint-carving)” 속성)을 지시하지 않을 것이다.⁸⁾ “셜록 홈스”를 실제 인물의 이름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아직도 플로지스톤이나 에테르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홈스가 포함된 서사의 산출 과정에 대한 정보와 연소과정과 대기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주어지면 이 단어들의 현실적 지시체는 없는 것으로 폭로(debunking)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술어가 지시체를 가지는지는 그것이 유의미한 사고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념인지, 그리고 그 개념이 포함된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는 현상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 그 개념의 지시체의 실제 존재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의존한다.

파팻에 의하면 사소함 논증과 규범성 논증은 규범 술어가 자연적 속성을 지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규범 술어가 (자연적인 것과 다른) 어떤 것을 지시체로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 그것은 언어 체계 밖의 지시체를 갖지 않고 개념으로만 있을 가능성도 있다. 파팻의 “용어-발생적” “기술-부합적” 속성관은 언뜻 유의미한 모든 술어가 **나름**의 속성을 지시한다는 입장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⁹⁾ 파팻은 또한 규범적

8) 모든 선언적 술어에 대해 지시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토니에 의하면 “cow or bull”은 하나의 자연 종(*Bos Taurus*)을 지시체로 가지는데 이는 단지 일부 언어에서 소의 암수 개체를 포괄하는 단어가 없음을 보여준다. Antony (2008), 168. 루이스의 개념으로 메타윤리학에서의 핵심적 개념과 입장들을 규정하는 사례는 McPherson (2015).

9) 파팻은 또한 술어의 의미와 기술의 차이가 그것이 진술하는 사실의 차이를 초래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곤 하는데, 이는 마치 “삼각형임”과 “세변 도형임”처럼 **필연적으로** 동일한 외연을 가졌더라도 의미가 다르다면 다른 속성을 지칭한다는 극단-내

개념들이 포함된 사고의 진리를 인지하게 되는 것은 (관찰이나 귀납적 추론이 아니라) 그 명제의 내용을 인지했을 때 주관이 가지는 내재적 신뢰성 (intrinsic credibility)과 명백한 반대 직관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II, 32, 33 장) 여기서 “내재적” 신뢰성과 반대 “직관”의 개념은 규범 명제의 참에 대한 증거가 전혀 필요 없음을 함축하는 것일까?

하지만 애초에 그 확연한 의미와 내용 때문에 지시적 기능을 한다고 여겨졌지만 그 직관이 폭로 논증에 의해 무너진 경우들이 많지 않은가? 여기서 폭로 논증은 위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대개 어떤 술어가 포함된 믿음의 발생과 유지에 대해 술어의 지시체 없이 제공된 설명이 지시체에 근거한 설명보다 더 우월하다는 구조로 된 논증이다. 반면에 가능한 폭로성 논증을 다 이겨 내는 가설이 있다면 그 가설에 담긴 대상의 실재함에 대한 개연성은 증가된다.¹⁰⁾ 이는 어떤 궁금한 현상 (그 원인이 아직 관찰되지 않은 현상)의 설명에서 나쁜 가설을 제거하고 최선의 설명적 가설을 결론으로 내는 소거논증(abduction) 혹은 최선설명으로의 논증의 전형적 형태에 해당한다. 실제로 수학적 대상이나 속성, 관찰 불가능한 미립자에 대한 실재론자들이 자주 기대는 논증이다. 그들에 의하면 중요한 인식적 기획에 수학적 대상이나 미립자에 대한 믿음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그 믿음의 참에 대한 최선 설명은 (폭로성 논증이 아니라) 포함된 대상의 실재라는 것이다. 이들의 소거논증은 따로 필수불가결 논증 (indispensability argument)이라 불린다.

포적(hyperintensional) 속성 개별화 입장을 시사하는 듯하다. (III, 74-76) 하지만 파팻은 또 한편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동일 속성을 지칭하는 경우, 혹은 (분할 불가능함을 내포하는 “atom”이 분할 가능한 것을 지칭함이 알려진 것처럼) 확립된 의미가 그것과 다른 지시체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파팻에 의하면 “대부분의 기술적 단어와 구절, 그리고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이름은 상당히 정확하게 그것이 지칭하는 개체와 속성을 기술”하기에 몇 가지 예외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지칭 대상이나 속성 사이의] 어긋남(mismatch)이 심대할 수는 없다.” (75-76)

- 10) 진화론에 경도된 일부 철학자들은 도덕 속성에 대해 폭로 논증을 제시한다. 그들에 의하면 도덕적 믿음과 성향이 진화에서 선택된 것이지 그 믿음의 참과 성향의 실제 지향 대상이 선택될 필요는 없다. 후자에 대한 파팻의 대응은 (Parfit II) 534-41 참조. 요컨대 파팻의 “내재적” 신뢰성도 폭로 논증을 이겨내야 한다.

나는 규범 명제의 참에 대한 “내재적” 신뢰성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성이 유지되고 반대 직관이 있을 경우 그것보다 애초의 신뢰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파팻이 일종의 필수부가결 논증과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요컨대 자연적 술어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중요한 인간 활동에서 규범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활동과 영역에서 규범이 필수적인가?¹¹⁾

첫째로, 파팻이 자연적으로 환원되지 않고 고유한 영역과 의미에서 존재하는 규범을 옹호한다는 사실에서 세계의 실제 모습에 규범이 포함되고 따라서 세계 이해의 기획에 규범이 필수적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규범의 존재론적 중요성을 함축하고 이는 파팻이 강조하여 부정하는 것이다. 파팻이 말하는 규범의 “존재”는, 그것을 우리가 세계의 존재물들 가운데 하나로 어떤 장소(locus)에서 발견해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규범적] 주장이 참이 되기 위해서 이유를 담고 있는 속성들은 자연적 속성들처럼 시공간 세계 내에 존재할 필요도 없고 [존재론적 함축을 가진 초자연적 속성처럼] 현실의 어떤 비시공간적 부분에 존재할 필요도 없다.” (II, 486)

둘째로, 세계 실상을 이해하는 기획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선택지는 바로 규범적 기획, 즉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행위 이유에 반응하는 활동이 바로 규범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것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연적 속성이나 사실은 “해야 함” 혹은 “행해지면 안 됨”을 내포하지 않기에 규범이 자연화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 전부 사라질 것이라는(nothing matters) (그리고 그것을 일생 연구해 온 자신의 삶도 낭비된 것으로 되리라는) 파팻의 반복된 언급, 결과적으로 좋고 나쁜 선택, 행위, 삶의

11) 도덕속성에 대해 파팻보다 더 명시적으로 필수불가결 논증에 의존하는 사례는 Enoch (2011) 3장 참조. 그에 의하면 도덕적 속고를 위해 규범적 믿음이 필수적이며 그 믿음의 참을 위해 그것이 함축하는 규범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가 옹호하는 규범은 비자연적이면서도 존재론적 위상에서 자연적 속성에 못지않은 강건한(robust) 속성이다.

방식의 차이도 사라질 것이라는 그의 염려를 고려하면 (I, 107; II, 367-8, 419, 425; III, 92) 비환원적 규범의 존재는 규범 현상 자체와 그것에 대한 사고와 참여에 필요하다는 것이 파팿의 견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파팿은 이 노선도 명시적으로 거부한다. 그에 의하면 불타는 건물 창가에 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곳에서 뛰어 내리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자연적** 사실이 바로 뛰어 내릴 이유에 해당한다. 그 사실이 행위이유임이라는 속성을 가진다는 메타 사실이 규범적 사실이지만, 후자는 자연적 사실이 제공하는 행위이유에 덧붙이는 “더 이상의(*further*) 행위이유”를 주지 않는다. (II, 763, 주465; II, 280) 다시 말해서 어떤 자연적 사실이 행위이유를 주관에게 부여한다는 규범적 사실은 “그 자체로 **규범적** 중요성 혹은 이유제공 효력을 소유하지 않는다” (III, 443, 주17; 본문 강조) 도덕의 차원에서는 파팿이 1권에서 장황하게 논의한 규칙 공리주의, 계약론, 칸트 의무론에 내재된 속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며 그것들이 규범을 구현한다는 메타 사실을 우리가 규범적 사고와 선택에서 주목할 필요는 없다.

세계 이해와 규범적 기획 모두에서 규범과 규범적 진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결국 파팿은 필수불가결 논증을 통한 규범의 옹호를 포기한 것인가? 내가 파팿이 이 논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여기는 이유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문장의 나머지 후반부에 있다. 특정 자연적 사실이 행위이유라는 규범적 진리는 규범적 중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대한 **메타-윤리적** 중요성을 갖는다.” 그리고 그 진리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what it is for things to matter*)에 대한 최선의 근본적 설명에 등장한다.” 이어지는 파팿의 설명은 아주 소략하지만, 나는 이 중요성이 그의 저작 전반의 근거에 있는 주요 메시지도 (다음 절에서 보겠지만) 향후 일부 메타윤리학자들의 작업으로 이어지는 중요 주제를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파팿의 메시지는 두 단계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로, 규범적 속성은 행위의 자연적 속성과 더불어 그 행위에 깃들여 있는 또 다른 속성이 아니라 그 자연적 속성 때문에 행위가 행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연적 속성이 가진 2차적 속성이다. 행위가 고통 최소화라는 자연적 속성을 가지고 후

자는 행위이유입 혹은 행해져야 함이라는 2차적 속성을 가진다. (III, 80-81) 한 행위가 특정 자연적 속성 때문에 수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참이어야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이 발생하게 되고, 규범적 속고는 바로 그 문제가 되는 것을 추적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다. 즉 주관이 어떤 자연적 속성에 반응하는데 그것이 2차 속성인 행위이유를 구현할 때 (진정한) 규범적 사고가 성립한다. 자연적 속성과 동일시 수 없고 두터운 존재론적 차원에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규범적 속고에 필요한 규범적 진리를 가능케 하는 2차 속성은 있어야 한다.¹²⁾

둘째로, 규범적 진리에 대한 “최선의 근본적 설명”은 형이상학적이거나 자연적/인과적이지 않다. (ibid.) 규범적 명제가 참이라 할 때, 행위의 자연적 속성(Na)은 행해져야 함이라는 2차 속성인 규범적 속성(No)을 갖는다. 이 진리에 대한 일차적 설명은 그것이 진정 문제시 되는 것의 발생에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설명에서 No에 어떤 존재론적 함축이 주어지지 않기에 이 설명은 형이상학적이 아니다. 즉 이 명제가 참이고 No가 존재해야 하지만 Na와 어떤 형이상학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은 다음 절 참조.) 더 나아가서 No 자체가 (파팍트의 비환원 논증들에 의하면) 자연적 속성이 아니기에 자연 법칙 하에 있는 두 항목들 간 관계일 수도 없고, Na (예를 들어 고통의 최소화)가 No를 가진다 혹은 행위를 옳게 만든다(right-making)고 할 때 여기서 ‘만듦’은 당연이 인과적 만듦(causal making)이 아니다. 그것은 행위가 가지는 1차 속성과 후자가 (동시에) 가지는 2차 속성 간 관계이다.

Na와 No 사이의 연관이 형이상학적 설명적 관계일 수 없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보자. Na가 그 자연적 본성 상 어떤 2차적 속성을 구현한다면 그리고 이 구현이 필연적이라면 이러한 구현은 구현되는 것의 존재론적 함축과 자연성을 함축할 가능성이 많고, 더 나아가서 형이상학적 필연성을 동

12) 비자연적 규범은 어떤 고유의 윤리적 역할이 아니라 자연적 속성에 규범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2차적 속성으로서의 역할을 가진다는, 파팍트와 유사한 주장은 Chappell (2019)에도 나온다.

반한 관계는 속성 동일로서의 환원을 도입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속성이 자연적 속성에 형이상학적 필연성을 동반하여 수반한다고 간주될 경우 그 수반을 설명하는 이론에 성격에 따라 수반에서 환원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관점을 생각하면¹³⁾ 두 속성 간 형이상학적 연관은 피하는 것이 파핏의 전반적 입장에 부합한다. (이는 파핏이 제시한 해명은 아니지만 형이상학적 연관을 거부하는 파핏의 진술에 대한 나의 이해이며 다음 절의 최근 논의와 파핏을 연결하려는 나의 시도이다.)

우리가 도달한 지점은 이것이다. 규범적 진리, 즉 자연적 속성이 2차 속성으로서 규범을 구현한다는 주장의 참이 세계에 진정으로 문제시되는 것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하다. (그 필요성이 규범의 존재 근거이다.) 그런데 이 진리에 함축된 두 속성 간 관계는 자연적/인과적이 아니며 형이상학적이지도 않다. 그렇다면 어떤 연관이며, 그 연관을 함축한 규범적 진리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파핏의 답은 이것이다: Na가 No-making의 역할을 한다는 명제의 진리는 “비환원적으로 규범적이다.” (ibid.) (이 맥락에서는 속성이 아니라 속성들 간 관계가 규범적이라는 말임.¹⁴⁾ 이 언급은 Na와 No의 관계가 우리에게 친숙한 속성 간 관계들인 자연적, 형이상학적 연관과 상이한 차원에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자연적으로 가능한 세계에서 혹은 이보다 더 넓은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한 세계에서 어떤 연관(수반, 근거, 환원)을 맺는다는 것이 주로 논의되는 속성 간 관계인데 “규범적” 연관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새로운 차원의 관계이기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찌 보면 속성 간 이러한 새로운 (“규범적”) 관계는 파핏의 입장에 진정 필요한 개념이다. 이미 말했듯이 자연적, 형이상학적 연관은 한 관련함이 자연적일 경우

13) 예를 들어 수반이 기능적으로 설명될 경우 고차의 기능적 속성은 결국 개념으로만 남고 속성 차원에서는 선언적 기저 속성들만이 존재한다는 관점 (Kim 2008)이 있고, 고차 기능적 술어들이 물리적 기저 술어들과 다른 자원을 갖고 있을 경우 나름의 법칙에 포섭되는 고유한 속성 영역을 구성한다는 반대 입장이 있음. 후자는 Antony (2008) 참조. 후자도 물론 수반속성이 비자연적임을 거부한다.

14) 규범속성이나 행위이유 자체를 (비자연적으로) 실체화하지 않고, 행위, 그 자연적 속성, 주관, 상황의 관계를 (자연적, 형이상학적 관계와 다른 유형으로) 특화하는 전략은 Scanlon (2014, 30ff)과 유사함.

다른 항을 비자연적이면서 비존재론적인 것으로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5. 규범적 근거와 규범적 필연성

한 속성이나 사실이 다른 것에 비대칭적으로 의존한다는 직관은, 형식적 수반관계를 넘어서서 둘 사이의 실질적 연관을 밝히고 수반적 공변을 설명하는 근거(ground) 개념에 의해 해명되는 것이 현재의 한 추세이다. 한 대상이 다른 것 **때문에** (*in virtue of*) 존재한다는 사실은 후자가 전자를 근거 짓는다는 것이고, 이 근거는 둘 사이의 필연성을 동반한 설명 관계이다.¹⁵⁾ 그런데 최근 논의를 추동한 파인에 의하면 세 가지 종류의 근거, 그리고 세 가지 종류의 필연성이 있다¹⁶⁾: (1) 필연적으로, 만약 공이 빨강고 또 그것이 둥글다면 그것은 빨강고 둥근 공이다; (2) 필연적으로, 만약 어떤 입자가 일정 양의 힘을 받는다면 그것은 가속한다; (3) 필연적으로, 만약 행위가 피해를 줄 의도로 행해졌다면 그것은 그르다. 세 경우 각각 전건 사실은 후건을 근거 짓는데, 첫째 필연성과 근거는 개체와 연언(conjunction)의 형이상학적 본성, 그리고 둘째는 두 항목이 자연법칙에 종속됨에 의한 근거와 필연성이고, 마지막 것은 규범적 사고에서 인지되는 필연성과 근거이다. 그리고 파인은 이 세 가지 근거가 하나의 포괄적 근거 관계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 나름의(*its own*)” 설명적 관계이고, 필연성도 각각의 고유한 설명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기울어져 있다.

파인의 규범적 근거와 필연성 개념이 메타윤리학에서 중요하게 기능할 것이라 믿는 일부 논자들은 그의 관점을 이어받아 규범적 필연성이 형이상학적, 자연적 필연성과 구분되는 “나름의” 필연성이라고 보지만 (역시 파인의 암시대) 대체로 형이상학 필연성보다는 약하고 자연적 필연성보다는 강한 지점에 그것을 설정한다. 자연 법칙이 변해도 규범적 필연성과 근거 관계는 성립해야 하지만,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한 모든 세계에서 성립할 필

15) 근거에 대한 주요 문헌과 이슈는 주동료 (2016), 143-46 참조.

16) Fine (2012), 38.

요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공리주의가 올바른 도덕원칙이라면 개인들이 현 세계와 다른 직업을 가지거나 열역학 법칙들이 변하더라도 그것은 올바른 원칙이어야 하지만, 그 올바른 범위는 호모 사피엔스나 기타 자연 종들, 그리고 집합이나 논리적 연산관계의 본성이 유지되는 모든 세계일 필요는 없다. 사물들의 동일한 형이상학적 본성이 고정된다고 해서 올바른 규범의 내용이 고정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규범적 필연성은 형이상학적 필연성보다 약하고 그렇기에 그것과 구분된다.

어떤 행위가 고통을 최소화하기(Na) 때문에 옳다는(No) 판단은 전자가 후자를 규범적으로 근거 짓는다는 말이고, 이는 Na가 있다면 No가 있는 것이 규범적으로 필연적이라는 말이다. (혹은 Na가 형이상학적으로 No를 근거 짓는 과정과 구조에 **규범적** 필연성이 어딘가 개입한다는 말이다.¹⁷⁾ 그런데 왜 규범의 비자연주의자가 이러한 규범적 근거와 필연성에 주목하는가?¹⁸⁾ 그 이유는 내가 보기에 두 가지이다. 첫째는, 만약 Na와 No의 (의존) 관계가 형이상학적 필연성으로 이해된다면 그 필연성은 근거의 본질 혹은 근거되는 것의 본질 (혹은 둘 다의 본질)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묶인다는 말이고¹⁹⁾ 어느 편을 택하던 자연주의의 음영이 짙게 드리우는 결과를 초래한

17) 고통 최소화(Na)만으로는 옳음(No)이 완전히 (full) 근거되지 않기에 “모든 Na가 No를 구현한다”는 일반원칙이 개입해야 하는데, 원칙을 No의 부분적(partial) 형이상학적 근거로 간주하는 노선과 근거에 포함되지 않지만 Na와 No 사이의 형이상학적 근거관계를 관장(govern)하는 원칙으로 간주하는 노선이 있다. (후자는 마치 인과법칙이 원인에 포함되지 않고 추론원칙이 전체에 포함되지 않지만 인과관계와 추론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 물론 근거에 포함되던 근거관계를 관장하는 역할이던 규범원칙 안에서는 Na와 No는 단지 **규범적** 필연성으로만 연관된다. 첫째 노선은 Rosen (2017, forthcoming), Enoch (2019), 후자는 Bader (2017), Leary (2017) 참조. 나는 이러한 세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자연주의는 Na와 No 관계를 해명하는 어느 부분에서는 둘 사이의 비형이상학적 근거와 필연적 관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 노선들을 함께 논의한다.

18) 위의 주에서 언급한 문헌과 Morton (2020). 행위, 그 자연적 속성, 그리고 이유/규범의 관계 자체가 형이상학적이 아니고 비환원적으로 규범적 이라는 파렛의 암시도 **규범적** 근거 개념을 지향하고 있다.

19) 파인의 관점을 토대로 필연적 속성이 본질적 속성에 의해 설명된다는 관점—그 반대가 아니라—에 대한 해설과 논의는 한성일 (2015), 82-86 참조.

다. 애초에 수반이나 그것을 설명하는 근거가 대개 형이상학적 필연성이 포함된 개념이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수반에서 근거로, 그리고 근거에서 환원으로 가는 길은 필연적은 아니지만 왜 그리고 어디서 그것이 멈추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 길로 가지 않더라도 고통의 **형이상학적** 본질에 의해, 혹은 옳음의 **형이상학적** 본질에 의해 고통 최소화가 필연적으로 옳다는 말은 규범 자연주의에 이미 발을 내디딘 것이라 간주될 것이다. 그러므로 비자연주의가 설 수 있으려면 No가 Na에 의존하되 **형이상학적** 필연적으로 그런 것은 아님을 말해야 한다.

둘째로, No의 Na에의 수반을 해명하는데 비자연주의가 상대적으로 큰 난점이 있다고 지적된다.²⁰⁾ 비자연적 속성은 자연적 속성과 존재론적으로 불연속적(discontinuous)이기에 둘 사이의 필연적 연관은 부정되거나 해명 불가능한 것(brute)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규범적 근거와 필연성을 도입하면 이 난점이 해결 혹은 해소된다고 보는 이들의 생각은 이렇다. 만약 No의 **규범적** 본성에 의해 그 구현이 어떤 자연속성을 요구한다면, 그리고 그 답으로 특정 Na에 도달한다면 동일 규범원칙을 유지하는 한 동일 Na에 대해 동일 No를 귀속시켜야 한다. 그것이 No의 규범으로서의 본질이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이는 No가 왜 Na에 의존하는지를 설명하고 왜 일종의 필연성으로 그런 의존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말해준다. (규범적 본질이 요구하는 것은 규범적 필연성을 동반하므로.) 설명의 원천인 No의 규범적 본질이 어디서 왔는지, No가 왜 그런 본질을 가졌는지를 묻는 것은 모든 본질에 대해서 그렇듯이 부당한 해명요구이다. (Leary, 2017) 물론 이 설명에 개입하는 No의 본질과 그것이 요구하는 것-Na에 의한 구현-의 필연성은, 규범적 차원에서의 본질, 그리고 형이상학적 필연성보다 약한 필연성이다. 만약 규범적 수반이 반드시 형이상학적 필연성을 포함해야 한다면 일부 논자는 비자연주의가 그런 수반은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물론 규범에 대한 비자연주의와, 어떤 차원의 본질이 동일 차원의 필연성(만)을 동반한다는 주장이 규범의 형이상학적 수반에 대한 직관보다 더 공고하다

20) McPherson (2012), Väyrynen (2017), Dreier (2019).

는 전제하에서이지만. 이 관점에 의하면 형이상학적 가능세계 전체에서 통용되는 수반이나 필연성은 우리의 규범적 사고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Rosen, forthcoming)

규범적 근거와 필연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주요 반론들: 첫째로, 우리의 직관을 시험해 보면 도덕 원칙과 형이상학적 필연성 중에서 항상 후자가 더 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며, 이는 규범적 필연성이 형이상학적 필연성보다 더 약하고 따라서 그것과 다르다는 결론에 대한 개연성을 약화시킨다.²¹⁾ 둘째로, 만약에 규범적 필연성이 형이상학적 필연성보다 약하다면 우리와 형이상학적 양상에서 동일한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과 완전히 다른 규범원칙이 **올바른** 것일 수 있다. 그 세계에서는 고통 최소화는 그른 행위가 될 것이다. 형이상학적 동일 세계에서 우리 원칙이 틀릴 수 있기에 **이 세계에서 올바른 것** 이라는 사실은 완전히 우연이고 도덕적 운(moral luck)이다. 물론 우리의 원칙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겠지만, 그것이 변해야 한다면 (고통유발이 옳은 것이 된다면) 때로는 사물의 형이상학적 본질이 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은가?²²⁾ 마지막으로, 일부 논자는 형이상학적 근거와 규범적 근거가 연합할 수 있기에 (각각 하나의 전제에 속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에) 그것들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근거일 수 없다. 집합이건, 자연 사물이건, 규범적 속성이건 모두 그것들의 본질에 의해 특정의 다른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모든 근거는 광의의 형이상학적 근거라는 범주에 속한다. (Berker, 2018)

21) 형이상학적 필연성 (고양이는 동물임)과 도덕법칙(재미로 고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과 각각 양립 가능하지만 그 연합과 양립되지 않는 어떤 반사실적 조건문의 전건이 있다면(고양이 고문이 허용됨), 우리가 후건에서 우선적으로 부정해야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 진리일까 아니면 도덕법칙일까? 도덕법칙에 포함된 규범적 필연성이 형이상학적 필연성보다 약하다면 도덕법칙이 부정되어야 하지만, 이 가정 하에서 (즉 고양이가 고문이 허용된다면) “고양이가 그것의 현실 존재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할 것이고 동물이 아니라 로봇과 같은 것이리라”는 직관이 우세하다면, 결국 도덕법칙을 유지하고 형이상학적 필연성(고양이는 동물임)을 포기한 것이다. Lange (2018), 180.

22) Väyrynen (2017),182; Dreier (2019). 1406.

나는 이 비판들이 규범적 근거/필연성의 고유한 범주에 의존하는 비자연주의에 딜레마를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Na와 No 사이의 규범적 필연적 관계는 (일부 혹은 전체) 관계 항의 본질에 의존하거나 그들의 본질과 무관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만약 규범적 필연성이 Na와 No의 본질과 무관하다면, 그 필연성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규범적 속고를 통해 특정 Na와 No를 연결하는 원칙에 도달할 때, 그리고 그 원칙이 단순 전칭 일반화가 아니라 **필연적 일반화**라면 Na와 No의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그 추론이 가능한가? 그 필연성이 그것들의 본질과 무관한 차원의 필연성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규범적으로 필연적이지만 형이상학적 우연성을 함축하므로 위에서 언급된 대로 형이상학적으로 동일한 세계들에서 한 도덕원칙이 어느 때는 올바르고 다른 때는 잘못된 것일 수 있기에 우리가 그것들 중 어느 세계에 속하는지 알 수 없고 올바른 원칙의 세계에 있다고 해도 이는 도덕적 운에 속하게 된다. 반면에, 만약 규범적 필연성도 Na 혹은 No, 혹은 둘 다의 본질에 의해 성립한다면 어떤 자연 속성의 본질에 의해 그것이 필연적으로 규범을 구현하고 그것 때문에 규범이 귀속되거나, 규범의 본질에 의해 특정 자연 속성에 의해 필연적으로 구현되기에 이는 자연주의와 별반 다른 입장이 아니게 된다. 파인은 근거되는 것이 근거에 “해당한다(is)”거나 그것으로 흡수되어 비실재로 됨을 함축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근거가 성립하면 근거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성립하는지에 대한 “더 엄격한 혹은 완전한 해명이 없기에... [최소한] 설명적 간극(gap)은 사라진다.”²³⁾ 그리고 규범이 자연적 근거에 의해 남김없이 설명된다는 것이 바로 규범에 관한 자연주의이다.

내가 제기한 딜레마에 대한 두 비판이 가능하다. 첫째는 거짓 딜레마의 의혹인데, 내가 기술한 딜레마의 둘째 길에 개입한 것이 **형이상학적** 본질이

23) Fine (2012), 39. 혹자는 본질에 의해 필연적으로 Na-No를 연결하는 원칙이 근거에 포함되면 자연주의로 귀착하지만, 그 원칙이 근거를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면 자연주의를 피할 수 있다고 보지만 (Morton 2020, Bader 2017), 나는 본질에 의한 필연성으로 규범을 함축하는 자연적 속성이 포함된 원칙이 근거를 관장하는 것도 자연주의의 전형적 형태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 원칙이 가능케 하는 Na → No 근거가 형이상학적 근거이기에 더욱 그렇다.

며 인용된 파인의 언급이 형이상학적 근거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항의 **규범적** 본질이 (필연성에) 개입하는 제3의 길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여기서 자연적 속성인 Na가 **규범적** 본성을 가진다면 이미 자연주의가 된 것이라 No의 규범적 속성이 이 필연성을 가능케 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그것이 Na와 필연적으로 묶으려면 Na의 (자연적, 형이상학적) 본질을 참조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No의 규범적 본질이 그것의 본질의 일부이고 No의 본질이 그것의 정체성으로부터 온다면,²⁴⁾ 여전히 그 규범적 본질은 그것의 형이상학적 본질의 일부이어야 한다.²⁵⁾ 둘째로, 딜레마의 첫째 길이 처한 곤경은 형이상학적 필연성보다 약하고 본질에 입각하지 않은 필연성은 수반을 설명하는 근거로서 미흡하다는 것인데, 혹자는 다수의 도덕 원칙들이 경합하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과 도덕원칙 추론과 옹호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고려하면 자연적으로 동일한 대상이 상이한 규범을 구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하기에, 내가 제시한 상황이 곤경임을 부정하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규범 영역에서 수반이나 근거의 이념은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한 모든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그 기저로 믿는 Na에 옳음이 수반하거나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 어떤 원칙이라도 그것이 최선의 규범적 속고에 의해 도달된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가능 세계에서 통용될 것이라는 직관을 갖고 그러한 강도의 수반과 근거를 견지하겠지만, 다른 원칙의 지지자들이 다른 형태의 수반과 근거를 믿는

24) 한성일 (2015), 83 이하.

25) 만약 X가 그것의 형이상학적 본질에 의해 어떤 자연적인 것에 **필연적으로** 의존한다면, 즉 후자에 근거한다면 X가 후자로 환원되거나 최소한 비자연적인 것일 수 없다는 필자의 주장에 대해서, X가 집합인 경우를 예로 들어 반대할 수 있다. 형이상학적 근거의 사례로 파인이 자주 드는, “소크라테스를 유일한 원소로 하는 단원소 집합은 소크라테스에 근거하고 그 반대는 아니다”에서 우리가 한 인간을 자연대상으로 간주하더라도 (단원소) 집합이 자연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집합의 본성에 대한 비자연주의를 채택한다고 해도, 나는 이것이 나의 주장에 대한 반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나의 논의는 두 부류의 **속성들** 간 근거 관계에 제한되어 있다. 둘째로, 파인의 사례에서 중요하게 기능하는 것은 집합의 본질일 뿐이다. 소크라테스를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하더라도 그 사례는 성립하기에 애초에 그것이 필연적으로 묶인 상대방의 본성을 참조할 필요가 없다.

다는 것은 각자가 믿는 수반이 형이상학적 필연성을 동반하는 이념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각 원칙은 판단 대상의 형이상학적 본질의 다른 측면 혹은 다른 본질—고통 관련적 본질, 이성 역량 관련 본질 혹은 사회적 본질 등—에 규범의 닻을 내릴 것이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한 수반과 근거는 형이상학적 필연성으로 유지될 것이다. 지금 내가 상정한 기저 속성은 아니더라도 각 이론 체계 내에서는 왜 **그것의** 기저 속성에 규범이 형이상학적 강도로 수반한다고 믿는지를 해명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과제이다.

나는 선행 비판이나 나의 문제제기가 규범적 근거와 필연성을 폐기할 만한 논증을 구성한다고 보지 않는다. 단지 비자연주의의 기초를 유지하려면 형이상학적인 것과 다른 이론적 공간에 규범적 근거와 필연성의 입지를 마련해야 하고 규범적 직관과 부합하는 식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점, 하지만 아직 그 입지와 해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6. 규범과 자연적 속성이 “너무도 다르다”는 직관과 이와 관련된 비자연주의로의 동기들

필수불가결 논증과 같은 이론적 이유 이외에도 파팿이나 다른 비자연주의들이 비환원적이고 비자연적인 규범을 믿는 또 다른 주요 이유는 규범이 고통 최소화와 같은 자연적 속성과 “너무나도 다른” 현상적 특질을 가진다는 직관이다. (물론 이 직관이 규범의 귀속 없이 설명가능하다는 폭로 논증이 나온다면 그것을 물리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지만.) 이 직관과 함께 몇 가지 비자연주의를 위한 주요 동기는 다음과 같다.

(1) **“너무나 다름”의 직관**²⁶⁾: 강과 소네트와 같이 자연적 속성과 규범은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한다는 직관이 규범의 비자연성에 기여하는 이유를 파팿은 규범이 현상적으로, 즉 규범언어와 규범적 사고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규범의 구현 대상에 의해 단적으로 가지는 생각의 차원에서, 더 이상 다른

26) “너무나 다름(too different)”의 직관으로 비자연주의를 옹호하는 Enoch (2011), 6 이하도 참조.

것에 의해 분해되거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다는 데서 찾는다. 그에 의하면 물이나 열의 전(前)과학적 개념이 어떤 인과적 기능(무색무취 이면서 갈증을 채워 주는 것; 뜨겁게 느껴지고 고체를 녹이는 것)을 하는 것임을 의미하기에 그것을 채우는 것—나중에 과학에 의해 발견될 것—을 요구하지만, 규범은 그러한 설명적 간극(explanatory gap)이 없는 개념이다. (II, 302이하; III, 77이하.) 다시 말해 가장 근본적인 규범 개념들 (행위이유, 그림)은 단순하고 나름의 의미를 가질 뿐 더 이상 분해/분석되지 않는다. 그리고 의미나 기술과 지칭 대상의 “어긋남(mismatch)이 그리 심대할 수 없다”는 파렛의 주장(III, 76)을 첨가하면, 그 어떤 자연적 개념의 지시체와 규범 개념의 지시체는 동일할 수 없다.

“너무나 다름” 직관에 의존하는 비자연주의에 대해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다양한 대응이 제시되었다. 규범 개념이 특정 자연적 개념과 동일 속성을 지칭하더라도 “너무나 다름” 의미 차원의 외양을 가진 것은, 규범 개념에는 지시적 기능 뿐 아니라 담론 상황에서 청자의 태도에 일정 변화를 요청하는 화용론적 요소도 있기 때문이라는 해명, 규범 개념을 소유한 상태가 규범이 지칭하는 속성 (자연주의에 의하면 자연적 속성)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그 속성 구현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으려는 비인지적 태도도 포함한다는 주장, 그리고 규범은 권위를 가진 기준을 위반하면 처벌과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고방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 등이 제시된다.²⁷⁾ 지시적 기능 이외의 이런 요소들이 규범 개념 습득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작동하고 내면화됨에 의해, 그리고 그것을 강화하는 피드백에 의해 일상적 속성과는 다른 “특수하고 고유한(*sui generis*)” 속성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Copp 2020, 261-2).

파렛은 아마도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자신이 염두에 둔 규범(행위이유와 그림)은 어떤 기능을 하거나 주관의 태도나 관례적 규칙을 반영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그것은 보다 원초적 개념이고 의미가 분해되지 않기

27) 각각 Dowell & Sobel (2017), Laskowski (2019), Copp (2020) 참조.

에 지시체 차원에서도 그런 복합적 구성요소들을 갖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하지만 레일턴의 지적대로 물의 개념도 오랜 기간 동안 (분해되지 않는) “근본적 실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Railton 2017, 57), 규범 개념도 저변에서 복합적 (역할) 요소들로 분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규범의 개념을 가르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단순 속성에의 직접 대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제안들에 나온 규칙, 위반 시의 처벌감수, 실수 가능성, 욕구되어 마땅함, 그리고 이에 더해 타산적,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 있는 상태를 위한 행위의 효력의 관념들을 동원하여 그것들을 포괄하는 한 개념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 요소들로 ‘행위이유’ 혹은 ‘그름’이 남김없이 분석되지 않지만 이것들이 융합된 역할의 리스트를 내포하고 있는 (따라서 설명적 간극을 담고 있는) 어떤 개념이 규범일 개연성은 상당하다고 보인다. 자연주의의 기획은 바로 규범을 구성하는 이 복합적 역할 리스트를 가장 적절하게 충족시키고 설명적 간극을 메우는, 그리고 실제 세계의 결을 자르는 유사성을 반영하는 고차 자연적 속성을 추적하는 것이다.²⁸⁾

(2) 정의 불가능성의 다른 측면들: 정의 불가능성이 어떤 단어의 의미가 필요충분조건에 의해 해명되지 않고 오직 가족 유사성만을 가진 개방 개념 (open concept)임을 의미한다고 해도,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지적했듯이 많은 일상적 개념들 (“게임”, “똑똑하다”)이 이런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비자연성이 함축되지 않는다. 아마도 파팰은 일부 규범 개념들이 정의될 수 있다고 해도 정의항에 이미 (다른 보다 근본적인) 규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자연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규범성을 유지하고자 할지도 모른다. “너무도 다름”에 대한 자연주의적 해명에 동원된 판단자 욕구나 기준 위반 시의 처벌이나 비난감수 개념들도 실상은 욕구되어 마땅함(desirable), 비난되어 마땅함(blameworthy)이어야 규범을 해명할 수 있

28) 근본적 가치 달성의 효율성을 핵으로 하는 규범 해명에 대해서 주동률 (2015), 137-41 참조. 나는 그곳에서 이 해명이 좁은 의미의 결과주의적 편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보이려고 했다.

는데 이들은 이미 마땅함이라는 규범속성을 포함한다. (III, 73) 실상 어떤 규범 해명도 완전히 비규범적 술어들로만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레이턴의 광의의 ‘최선의 결과’에도 소유되어 **마땅한** 지식이나 미적 향수, 인간관계만이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순환적 정의가 실질적 정보 제공력이 부재한 것도 아니며 관련 개념들의 지시체가 비자연적임을 확립하는 것도 아니다.²⁹⁾

(3) **근본성**: 파팿에 의하면 행위이유나 그림은 ‘근본적(fundamental)’ 개념이고 다른 근본적 개념들인 시간, 공간, 필연성, 가능성의 경우처럼 (그 의미 정의 불가능성과 의미-지시체의 상당한 부합(match) 하에서) 어떤 것이 그것의 지시체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 (ibid.) 정의 가능한 자연적 개념이 지시하는 것은 근본 개념의 지시체일 수 없다는 것이다. 위의 ‘근본’ 개념들의 정의는 불가능하더라도 그 **지시체에** 대해 실질적 정의 혹은 해명 (real definition)을 시도하는 입장도 있거니와, 어떤 설명 체계에서 다른 것을 설명하거나 근거 짓지만 자신은 더 이상의 설명이나 근거를 갖지 않는 모든 속성이나 대상이 비자연적인 것은 아니다. 물리주의 설명체계 내에서 ‘근본적인’ 토대인 미립자의 속성이나 행태는 왜 그런 것이 구현되는지의 설명 요구가 부당하더라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비자연적이지는 않다. ‘너무도 다름’ 직관과 이어지는 해명에서, 우리는 의미-지시체 간 완전 혹은 너무 밀접한 부합 (거의 극단 내포적(hyperintensional) 규범이론)에 기대는 것은 그리 만족스런 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파팿의 비자연주의는 규범에 대한 사고와 행태의 실재론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규범속성이 자연적 속성과 같을 수 없다는 몇 가지 직관과 논증의 힘도 수용하고, 비자연적 영역의 인식적, 형이상학적 취약성을 피하고자 규범의 존재론적 함축을 약화 혹은 배제한다. 하지만 언뜻 좋은 것을 모두 견

29) 이는 정의항들이 얼마나 두터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아마도 예술, 법, 종교 관련 개념들의 정의가 완전히 외부적 요소들로만 채워지지 않을 것이지만, 이 사실이 그 전체 영역이나 핵심 개념의 비자연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순환성은 인간-관련 문화 활동 전반의 특성일 것이다.

지하려는 관점은 이론에서나 현실에서나 항상 불안정하다. 실재론적 성격과 존재론적 함축의 배제 사이에는 상당한 긴장이 있다. 따라서 파팿은 넓은 의미에서라도 개념으로만 있지 않고 존재하는 속성으로 규범을 부각할 필요가 있고, 이 존재를 비자연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규범에 대한 사고에서 규범 속성의 필요성과 그것의 근거가 되는 자연적 속성과의 관계의 특수성을 논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째는 개별적 경우에 규범의 존재는 자연적 속성에 의존하지만, 규범을 구현하는 자연적 속성들 간 의미 있는 유사성이 없다는 입장, 즉 개별주의(particularism)이다.³⁰⁾ 그런데 이는 규칙 공리주의, 일종의 계약론과 칸트 의무론의 규범윤리적 중요성을 믿고 더구나 그것들 사이의 수렴을 옹호하는 파팿이 취할 길은 아니다. 둘째는 규범을 근거 짓는 자연적 속성들 간 유의미한 유사성을 인정하더라도 규범의 근거나 고차적 규범 관련 자연적 속성과 규범의 관계 자체가 형이상학적이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것이 바로 고유한 규범적 근거와 필연성에 의존하는 노선이다. 파팿의 긴 연구여정은 이러한 선택지들의 궤적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준다.

30) 규범 구현자들 간 자연적으로 의미 있는 공통점의 부재, 그리고 규범 구현의 맥락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체론의 관점에서 비자연주의로 나아간 사례들은 Dancy (2006), Roberts (2018) 참조.

참고문헌

- 주동률. (2015) 「규범성에 관한 파핏의 비자연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철학』 122집, pp. 125-50.
- _____. (2016) 「메타윤리학의 형이상학적 함축: 최근의 정적주의(quietism)에 관한 비판적 검토」. 『철학』 127집, pp. 127-51.
- 한성일. 2015. 「본질과 정체성」. 『철학』 124집, pp. 73-96.
- Antony, Louise. (2008) “Multiple Realization: Keeping It Real.” In Hohwy & Kallestrup (2008), pp. 164-75.
- Bader, Ralf. (2017) “The Grounding Argument against Non-reductive Moral Realism.” *Oxford Studies in Metaethics* 12, pp. 106-34.
- Berker, Selim. (2018) “The Unity of Grounding.” *Mind* 127, pp. 729-77.
- Chappell, Richard Yetter. (2019) “Why Care About Non-Natural Reasons?”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56, pp. 125-34.
- Copp, David. (2020) “Just Too Different: Normative Properties and Natural Properties.” *Philosophical Studies* 177, pp. 263-86.
- Dancy, Jonathan. (2006) “Nonnaturalism.” in D. Copp, ed. *Oxford Handbook of Ethical Theory*. Oxford UP, pp. 122-45.
- Dowell, J. L. & Sobel, David. (2017) “Advice for Non-Analytic Naturalists.” in S. Kirchin, ed. *Reading Parfit On What Matters*. Routledge, pp. 153-71.
- Dreier, Jamie. (2019) “Is There a Supervenience Problem for Robust Moral Realism?” *Philosophical Studies* 176, pp. 1391-1408.
- Enoch, David. (2011) *Taking Morality Seriously: A Defense of Robust Realism*. Oxford UP.
- _____. (2019) “How Principles Ground.” *Oxford Studies in Metaethics* 14, pp. 1-22.
- Fine, Kit. (2012) “Guide to Ground.” in F. Correia & B. Schnieder, eds.

- Metaphysical Grounding*. Cambridge UP, pp. 37-80.
- Hohwy, Jakob & Kallestrup, Jesper, eds. (2008) *Being Reduced*. Oxford UP.
- Kim, Jaegwon. (2008) "Reduction and Reductive Explanation: Is One Possible Without the Other?" In Hohwy & Kallestrup (2008), pp. 93-114.
- Lange, Marc. (2018) "What Would Normative Necessity Be?" *Journal of Philosophy* 115, pp. 169-86.
- Laskowski, Nicholas. (2019) "The Sense of Incredibility in Ethics." *Philosophical Studies* 176, pp. 93-115.
- Leary, Stephanie. (2017) "Non-naturalism and Normative Necessities." *Oxford Studies in Metaethics* 12, pp. 76-105.
- McPherson, Tristram. (2012) "Ethical Non-Naturalism and the Metaphysics of Supervenience" *Oxford Studies in Metaethics* 7, pp. 205-34.
- _____. (2015) "What is at Stake in Debates among Normative Realists?" *Noûs* 49, pp. 123-46.
- _____ & Plunkett, David, eds. (2018) *The Routledge Handbook of Metaethics*. Routledge.
- Mintz-Woo, Kian. (2018) "On Parfit's Ontology."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48, pp. 707-25.
- Morton, Justin. (2020) "Grounding the Normative: A Problem for Structured Non-Naturalism." *Philosophical Studies* 177, pp. 173-96.
- Parfit, Derek. (2011) *On What Matters*, Vol. I & II. Oxford UP.
- _____. (2017) *On What Matters*, Vol. III. Oxford UP.
- Olson, Jonas. (2018) "The Metaphysics of Reasons" in D. Star, ed. *The Oxford Handbook of Reasons and Normativity*. Oxford UP, pp. 255-74.

- Railton, Peter. (2003) *Facts, Values and Norms*. Cambridge UP.
- _____. (2017) “Two Sides of the Meta-Ethical Mountain?” in P. Singer, ed. *Does Anything Matter? Essays on Parfit on Objectivity*. Oxford UP, pp. 35-59.
- _____. (2018) “Naturalistic Realism in Metaethics.” in McPherson & Plunkett (2018), pp. 43-57.
- Roberts, Dabbie. (2018) “Why Believe in Normative Supervenience?” *Oxford Studies in Metaethics* 13, pp. 1-24.
- Rosen, Gideon. (2017) “What is a Moral Law?” *Oxford Studies in Metaethics* 12, pp. 135-59.
- _____. (forthcoming) “Normative Necessity” (https://www.academia.edu/9159728/Normative_Necessity)
- Scanlon, T. M. (2014) *Being Realistic About Reasons*. Oxford UP.
- Väyrynen, Pekka. (2018) “The Supervenience Challenge to Non-Naturalism.” in McPherson & Plunkett (2018), pp. 170-84.

한림대학교 철학과 교수
drchoo@hallym.ac.kr

Articles

**Scorekeeping in Debates between Non-Naturalism
and Its Opponents:
On Parfit's Last Statement in Metaethics**

Dong-Ryul Choo

In his last metaethical statement, Parfit revisits his earlier arguments for non-metaphysical normative non-naturalism, and points to the possibility of convergence between his view and Railton's non-analytical normative naturalism. I examine the basis of this convergence claim and find it unpersuasive, mainly because if their views converge on the same position, Parfit's non-natural norms exist only as predicates. In order to avoid this consequence, he needs to present a reason for believing in the existence of normative *properties*. There is an indispensability argument implicit in his text, with concepts of *sui generis* normative ground and necessity at its centre. I discuss their main features and present problems besetting these concepts.

[Subject] Metaethics, Metaphysics

[Keywords] Norms, Non-naturalism, Parfit, Ground